

# 변경대비표

## 1. 대상약관

-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
2. 시행일 : 2017년 9월 4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## 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제3조(계좌개설)①(생략)	제3조(계좌개설)① (현행과 같음)	
②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.	②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. <b>다만,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b>	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방안 2단계 시행(2017.9월)에 따른 개정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생략)	
(신설)	<b>&lt;부칙&gt;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b>	